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16 - 22호

「2016년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2.

2016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360백만원

○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20kW이하/공동주택(단지)	360	전기차 완속 충전기
			전기차 급속 충전기
계		360	-

주)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2016년 7월 8일 이후 전기차를 신청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입주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자(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또는 입주자 대표)

- 주) 1.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2. 태양광설치는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설비(엘리베이터 등)에 연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3. 지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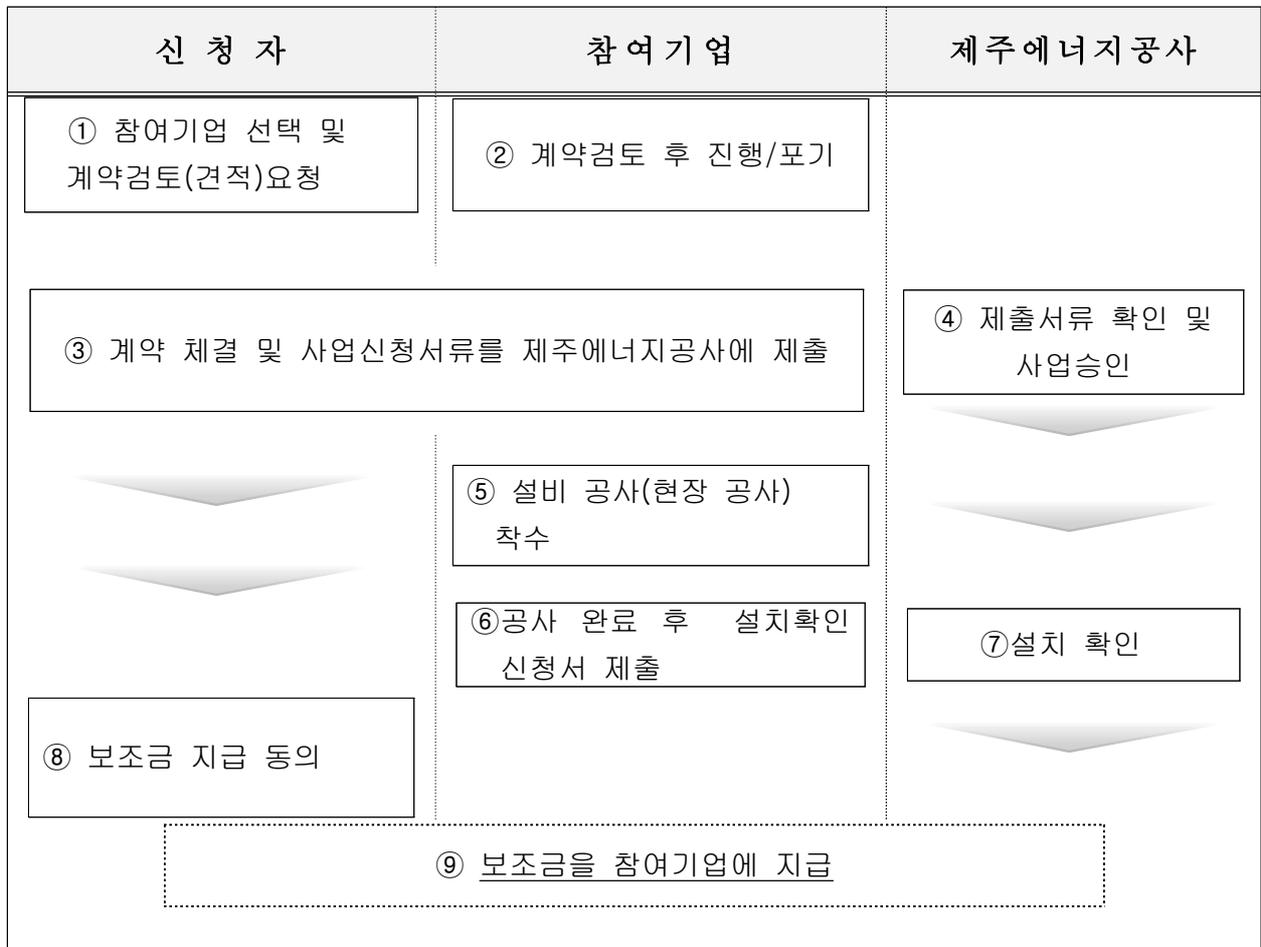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완속 충전기	1대당 2kW 이하	2,100/kW
	급속 충전기	1대당 10kW 이하	2,100/kW

- 주) 1. 총 공사비가 보조금 지원범위를 초과 할 경우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태양광설비 중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5. 모든 설비는 설치된 용량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4. 지원 절차



5. 사업 접수

□ 공동주택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진행내용	1차	비고
1~3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0.12(수) ~	
2~4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10.17(월) ~ 11.11(금) (매일 10:00 ~ 17:00)	11.11(금) 이후 신청 불가
2~5주	서류검토 및 사업승인	10.18(화) ~ 11.14(월)	

*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사업승인 후 취소 불가(공사 진행률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는 신청자 부담)

6. 기타사항

○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제주에너지공사 지침(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및 문의

-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http://www.jejuenergy.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 지원사업 관련 : 제주에너지공사 운영관리1팀 064-720-7461
 -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전력산업추진단 064-710-2562

별첨 1. 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2.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3. 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4.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5. 지원사업관련 연락처

6. 2016년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

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1. 참여 신청방법

① 신청자가 살고 있는 공동 주택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전화문의

※신청자는 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3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③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는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p><신청서 제출></p>	<p>⇒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신청자)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지침 별지 제7호)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제주에너지공사로 제출합니다.</p>
---	---

⑤ 참여기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p><설비 설치></p>	<p>⇒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p> <p>※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제주에너지공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p> <p>⇒참여기업은 <u>사업완료기간</u>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p>
--	---

⑥ 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제주에너지공사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p><설치 확인></p>	<p>⇒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은 설치완료확인서(지침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064-720-7461)</p> <p>⇒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p> <p>※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p>
--	--

⑦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으로 접수합니다.

 <p><고장접수></p>	<p>⇒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p> <p>⇒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p> <p>※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p>
---	---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공통사항

- ①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설비에 한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함
- ②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공사가 제시하는 「지침」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③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개인정보 수집 불가)에 따라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④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 가. 기 완공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 입주자 자필 동의서(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 나.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물명의로 신청 후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제출 필수
- ⑤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 (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장소 등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용을 신청자가 전액 부담
- ⑥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 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 참여기업

- ①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
- ② 참여기업은 공사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③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참여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공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④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내 용
태양광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 및 인버터(10kW이하) * 10kW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⑤ 참여기업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주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 이상)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⑥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⑦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 시공 완료 후,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⑧ 감리원 배치 필요 시 감리비 및 기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은 사업비 내 포함

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 신청자(소비자) 제출서류

-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1부.
- 표준설치 계약서 사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발급기관 : 읍·면·동사무소, 시청
- 입주민 동의서 1부.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 표준 설치계약서 1부
- 공사원가계산서 및 계약검토서 1부
- 2016년도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 2016년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
-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 하자이행보증서(총사업비의 5~10%)상에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출 하여야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5년 이상)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실제 부담할 금액)을 모두 합산
-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부
 - ※ 사후관리시 신청자에게 상기서류 미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또는 참여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별첨 4 >

태양광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기 설치된 수전용 계량기¹⁾ 외에 잉여전력용 계량기²⁾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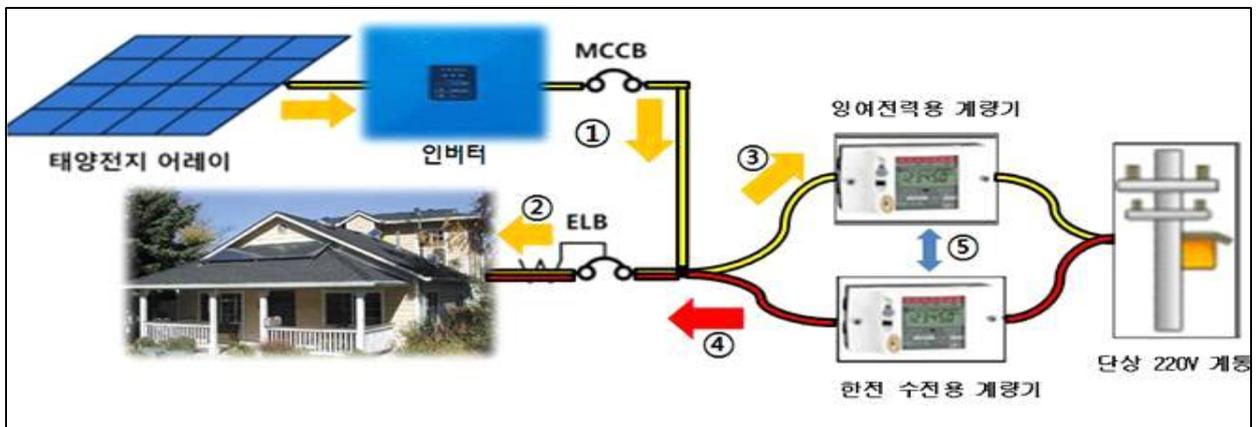
1) 수전용 계량기란?

- 일반적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아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2) 잉여전력용 계량기란?

-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발전량이 건물에서 소비한 전력량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전력량(발전량-소비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 전기사용량 : 한전에서 수전 받은 전력량, 전기소비량 : 자가발전을 통해 소비되는 전력량



- 태양광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 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지원사업 관련 연락처

- 제주에너지공사 지원사업 담당
- ☎ 064)720-7461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담당
- ☎ 064)710-2652

- 참여기업

기업명	소재지	전화	팩스
주식회사 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변영로 233(화북이동)	064-727-8446	064-727-8445
보타리에 너지(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130(화북이동)	064-747-8826	064-747-8827
주식회사 세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과원동로12번길 10(하효동)	064-733-4340	064-767-4340

2016년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 및 전기차용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업무대행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이라 함은 신규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될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도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장(또는 이에 준한 자)으로서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소유자”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7. “설치확인”이라 함은 공사가 따로 정한 태양광발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기관 등) ①지원사업 시행기관은 공사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확인을 시행하는 기관은 공사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공사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참여기업은 소관 사업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이 지침에 따라 지원절차에 맞게 신청하며 자체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취소 할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설치 계약서에 따라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⑥참여기업은 공사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의 설치확인, 설비의 가동상태·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를 공사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기간) 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공사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은 추경예산안 사업계획 기간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단가) ①공사의 장은 협약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 지원단가를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통해 산정한다.

②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공사의 장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시공기준 등) ①태양광발전 설비는 인증 된 제품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시공기준은 [별표 1], 설치확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시공기준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은 [별표 1-1]의 시공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참여기업 제안 및 평가) ①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참여제안서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 세

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 시 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참여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 지원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3.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소비자민원을 야기 시키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④제2항의 심사요소에 대한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은 공사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공사의 장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기업 확정 및 공시) ①공사의 장은 지원사업 공고 이전에 참여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장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참여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①공사의 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비공고 및 추가공고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도에서 직접공고 할 경우 별도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내용에는 지원사업 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은 매년 변경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한다.

④공사의 장은 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나 사업취소 포기 등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받을 수 있으며 사업 간 예산을 전용 할 수 있다.

제13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①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장은 제1항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장은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 등 시공자는 설치완료 후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해당설비의 표시사항 및 A/S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제14조(사업신청 및 방법) ①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공사에서 공시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된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설치 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 받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계약관련 내용, 자부담 금액, 무상하자보수조건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상호간의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④신청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표준 설치 계약서」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8호 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같이 제출한다.

제1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제14조와 관련하여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은 신규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될 예정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또는 이에 준한 자)만 가능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주민 동의를 제출(건축중인 공동주택은 제외) 하여야한다. 단, 주민동의를 개별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따른 동의 절차에 따르며 별도 주민동의서 양식이 있을 경우 대체 할 수 있다.

②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경우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평가 후 설치 여건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공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사의 장은 사업신청 검토 완료 후 참여기업 및 신청자에게 사업승인을 통보하며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의 장은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제17조(설비의 하자보수) ①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 상호간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은 설비설치 완료 후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

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공사에 제출한다.

③하자보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설비의 사후관리) ①공사의 장은 설비 설치 확인 후 하자기간 동안 시공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②참여기업은 하자기간 내에 설비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자체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공사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공사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장은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관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 업체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설비의 책임보험 가입) ①참여기업은 시공 완료 후, 설비의 설치 확인 전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하고 공사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완성작업위험 및 대위권 포기를 특약으로 가입하고 보상한도는 대인대물 일괄 1억원,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설비의 처분제한) ①지원사업으로 설치 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 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이하 “처분”이라 한다),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안전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이전·처분 등을 하려면 공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비 처분 승인 신청서」를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환수) ①보조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받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기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평가방법 및 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2. 참여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②제1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6.8.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제8조제1항 관련)

1. 총칙

가. 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현장점검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신청자, 발주자 등, “이하 소유자”)와 설계자(시공자) 등이 설계·시공·설치·관리 및 기타, 설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통 적용 기준

-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보급 정책에 수반되는 태양광(집광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비 등에 대해 규정한다.
- 2) KS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받은 설비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침 제11조 및 원별 시공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가)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
 - 나) 인증대상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는 경우
- 3) 시공기준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중·장기적으로 보급·주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보급 수요처의 특성에 맞게 이 시공기준을 보완·보강하여 준용·적용할 수 있다.
-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응용제품 개발·보급 및 설치 등으로 인해 시공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승인 당시 주관 부서의 처리방침 또는 설계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 5)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현장조건 등으로 인하여 설계 또는 시공시 시공기준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 예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책무 사항

1)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

가)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는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서 기준 포함)이 설계·시공·설치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나)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시공기준에 규정된 재료(재질) 및 시공방법 등 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책임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에 있다.

다) 기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는 설치확인자가 사전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라. 해석에 관한 사항

1) 이 시공기준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시공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술기준 비교·판단·감정·해석 등을 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2)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비의 설계·시공기술이 날로 개발·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감안할 때 시공기준의 규정·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가. 태양전지판

1) 모듈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인증받은 설비와 유사한 형태(모듈의 종류 및 구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용량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3) 일조시간

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조시간은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태양광모듈 설치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

가)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양광설비를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철제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적설·풍하중 등의 구조·안전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태양광설비를 건물(주택 포함)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설비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듈을 지붕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모듈과 지붕면간 간격은 10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워셔 또는 폴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가) 모듈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모듈-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 ② 스테인레스 스틸(STS)
- ③ 알루미늄합금
- ④ ①호부터 ③호까지 동등이상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인증 대상제품인 경우,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KS인증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성능 이상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센터로 제출·담당자 확인을 거친 것. 단, 해당재질로 모듈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구조기술사로부터 연결부위를 포함하여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받아 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볼트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전기배선

가) 모듈에서 실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TFR-CV 선을 사용하여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모듈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균별·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듈 직, 병렬상태

모듈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출력점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역전류방지다이오드

가)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역

전류방지다이오드를 별도의 접속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용량은 모듈단락전류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속함

가) 접속반의 각 회로에서 퓨즈 또는 DC차단기를 설치하고, 단락되어 전류차가 발생할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면부는 직사광선을 견딜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이상(내열성)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고, 내부 발생열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구 및 방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함·인버터 일체형인 경우에 전면부·환기구 적용은 예외로 한다.

5) 전압강하

모듈에서 인버터입력단간 및 인버터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치확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전압강하
120m 이하	5%
200m 이하	6%
200m 초과	7%

라. 인버터

1) 제품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상태

실내·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용을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5kW이상 용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용량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

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4)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기 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만,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6)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이하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가) BIPV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창호, 스펠드럴, 커튼월, 이중과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완전히 둘러싸는 벽·창·지붕 형태로 한정한다.

나) 신청자(소유자, 발주처 등을 포함),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고 감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

- ① 모듈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 부자재 파괴방지 및 발전량저감 최소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가이드라인(제8조제2항 관련)

1. 태양광설비 시공가이드라인

가. 태양전지판

1)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가능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2)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되 가능한 일반적 최적 경사각인 30°에 근접하도록 한다.

나. 접속함

1) 커넥터(접속 배선함)

가)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은 냉간압연 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를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도록 한다.

나) 태양전지판 결선 시에 접속 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접속 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의 방수용 커넥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화재예방조치

가) 방진방수등급 IP54 이상의 접속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나) 역전류방지 다이오드 용량은 모듈단락전류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다) 인버터 발산열로 인한 접속함 내부온도 상승방지를 위해 접속함과 인버터는 다른 선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 기타

1) BIPV

신청자(소유자, 발주처 등을 포함),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설계·시공하도록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BIPV와 연결된 건축물 부위에는 단열을 위한 열손실 방지 대책을 설계, 시공시 반영하도록 한다.

나) 모듈 배면으로의 태양일사 유입을 최소화하거나 모듈배면에 통풍이 가능한 방안을

설계, 시공시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내부 공기량이 적은 스펠드럴 등의 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백쉬트 방식을 적용하거나 GTOG(Glass To Glass)방식의 경우 모듈의 셀 대비 유리면적 비율 축소, 일사확득계수가 낮은 BIPV 창호 적용 등 실내로의 태양일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설계시 반영하도록 한다.

다) 방수 기능은 외부의 비 또는 눈을 차단하는 것으로 모듈은 물론 모듈외의 건축외피와 모듈 사이의 접합부위 및 모듈간의 접합부위를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2) 태양광설비 설치시 관계법령(지자체 조례 포함)을 준수하도록 한다.

[별표 2]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확 인 기 준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2. 시공 및 가동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상태 - [별지 제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 ○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3. 주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4. 하자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지침 제20조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5.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적정성 여부 - 가입내용 및 기간, 보장 한도 등

[별표 3] 태양광발전설비 명판 설치기준 (제13조제4항 관련)

1. 명판 도안

설비명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태양광3kW(모듈용량*매수)/인버터 3kW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참여기업 및 AS책임자	기업명(대표자):(주)태양기업(홍길동)
	대표전화: 책임자 전화:
모듈 제조사 및 AS책임자	기업명(대표자):(주)제주모듈(홍길동)
	대표전화: 책임자 전화:
인버터 제조사 및 AS책임자	기업명(대표자):(주)제주인버터(홍길동)
	대표전화: 책임자 전화:

※ 본 설비를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 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주에너지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720-7400)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 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협약서

협약당사자	(갑)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을) 참여기업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약내용	설치분야	설비타입	보조금단가
	태양광발전	자가용	210 천원/kW 이내
	사업기간 : 2016년 9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사업기간의 연장은 공사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p>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2016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문 조 항</p> <p>제1조(사업의 목표) (갑)이 선정한 보조금단가로 사업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2016.12.31.일 까지)내에 승인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단 (갑)의 승인이 있을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p> <p>제2조(협약의 체결) ①(갑), (을)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다.</p> <p>제3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갑)은 (을)이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사업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의 관리) ①(을)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와 (갑)이 정하는 표준설치계약서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갑)에게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필요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시설의 준공) ①(을)은 사업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준공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을)은 차년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갑)은 (을)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p> <p>제6조(보조금의 지급) ①(갑)은 (을)이 설치확인을 받은 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을)의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승인받은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제7조(보조금의 환수) (갑)이 정한 지침 등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p> <p>제8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을)은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p>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을)이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관련사업의 면허를 상실했을 경우
4. (을)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5. (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1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계약자와 체결한 기간 동안(5년 이상)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을)은 소유자의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주기적인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변경) ①(갑)은 사업 예산이 남을 경우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단독 주택 등)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타사항) ①(갑), (을)은 본 협약의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갑)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직인)

(을) (참여기업명) (직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제주에너지공사와 참여기업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input type="checkbox"/> 연계형 <input type="checkbox"/> 독립형/ <input type="checkbox"/> 고정형 <input type="checkbox"/> 추적형/ <input type="checkbox"/> PV <input type="checkbox"/>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도, 경사각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도, 경사각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input type="checkbox"/> 옥외 <input type="checkbox"/> 옥상 <input type="checkbox"/> 경사지붕 <input type="checkbox"/> 건물일체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직렬	병렬수(열)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직렬	병렬수(열)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input type="checkbox"/> 저압연계 <input type="checkbox"/>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날씨()		
	인버터1		전압AC(V), 전류AC(A), 주파수(Hz), 일사량(W/m ²)		
	인버터2		전압AC(V), 전류AC(A), 주파수(Hz), 일사량(W/m ²)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시 분)		
		인버터2	kW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매수확인	○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음영 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설치	○설치장소	○육안 확인	○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 철재구조물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 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사, 구조기술사 확인시 예외 ○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지붕에 직접 설치시 모듈-지붕면 최소간격10cm 이상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Mill Sheet 확인	○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일레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 ○제규격의 볼트, 너트, 워셔 삽입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균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접속함	○접속함	○육안 확인	○휴즈 또는 DC차단기 설치 및 단락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실내·외부에서 확인 가능) ○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접속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 ○접속함에 환기구 및 방열판 설치 - 인버터 일체형은 환기구적용 예외	
4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 용량 이상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설치상태	○설치장소	○옥내·옥외용 확인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 용량의 105%이내 ○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표시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인버터 전면에 부착	○육안 확인	○[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정상작동	○인버터	○육안확인	○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인버터, 전력량계 등	○육안 확인	○정상작동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의 면담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9	설치확인		○점검현장	○육안확인	○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 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확인서

관 리 번 호 : 제 호
사 업 명 :
설 치 장 소 :
소유자(관리자) :
참 여 기 업 :
설 비 내 역 :
- 설 비 명 :
- 사업용량(승인) :
- 설치용량(실제) :

귀하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유자(관리자)는 향후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비고 1. 이 확인서는 태양광발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이 확인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당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택,아파트명)	주 소		F A X	
	(을)	(참여기업명)	연 락 처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F A X		
		연 락 처				
계약내용	분야	태양광	설비타입	자가용	설치용량	KW
	공사명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A) (단위용량 당 보조금)	일금₩	천원 원/단위용량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예치금)(B)	일금₩	천원
본문조항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갑)은 설치비용중 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중 자부담금을 (을)의 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계약금(예치금)은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정하며 계약금(예치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③(을)은 (갑)의 예치금이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공사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보조금) ①공사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공사의 보조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갑)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③공사는 (을)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을)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공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에게 예치된 계약금(예치금)은 (갑)에게 반환한다.단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취소 할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를 (갑)이 제주에너지공사(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공사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인)		
				(직인)		
		(갑) (신청자명)				
		(을) (참여기업명)				

[별지 제8호 서식]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서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그 외의 용도	2016년도 공공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 계약 관련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3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에 √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 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문서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원가계산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고
1	재료비				주설비의 경우 모델명 기재
	-				
	-				
	-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 상기 원가계산은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태양광발전 설비 처분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폐기)				
신청자	성명 (주택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 소			
설치 장소	설비소유자		전 화	
			이동전화	
	주소	□□□□□□		
설비 내역	태양광 kW		관리번호	
	설치일	년 월 일	용 량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예정)일	년 월 일			
<p>상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제주에너지공사 귀하</p>				

※양도시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양도인/양수인), 양도양수증(별도양식없음) 각 1부